

바. 고용휴직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이하 ‘청원휴직 심사기준’)

2) 휴직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청원휴직 심사기준에 따라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함

3)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의 범위

- (1) 국제기구의 범위: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서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
- (2)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
- (3)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교육·연구기관
- (4) 다른 국가기관: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 교육청 제외)
- (5)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함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